

제 2857호		화순군공보		발행일 : 2019년 7월 4일 발행인 : 화 순 군 수 발행처 :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					
차 례									
고 시									
화순군 고시 제2019-85호		화순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						2	
화순군 고시 제2019-86호		화순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						3	
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회 란									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7. 3.

화 순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노대길 53-1 외 7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(※부여 8건)		불		임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 061-379-345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도로구간 변경(종점변경)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4, 제21조의 규정에 따라
우리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7. 3.

화 순 군



1. 고 시 일 : 2019. 7. 3.
2. 고시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
3. 고시내용 : 붙임 참조(조서 및 현황도)
4. 변경사유 : 주도로구간 종점변경(봉동길), 종속구간 종점변경(지석로)
5.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061-379-3453)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6조의4 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·변경·폐지로 도로구간의
끝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로서,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
생략할 수 있음.